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의정부시 저출산문제에 대응한 정책적제안 연구 최종보고서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의정부시 저출산문제에 대응한 정책적제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05.



KYUNGMIN UNIVERSITY
사람을 키우는 경민대학교

김환철 교수

제 출 문



의정부시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의정부시 저출산문제에 대응한 정책적제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05.20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연구진】

- 책임 연구원 : 김환철 교수
(경민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장)
- 공동 연구원 : 정원희 (건양대학교 교수)
정소현 (경민대학교 교수)
- 연구회대표의원 : 조금석
- 연구회 시의원 : 구구희, 김영숙, 김현주,
박순자, 임호석, 오범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제2장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현황 및 이론적 분석	7
제1절 저출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	7
1. 저출산의 개념	7
2. 저출산 정책의 의의	9
3. 저출산 이슈에 대한 심각성	11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이론적 검토	16
제3절 저출산의 국가적 현황	19
1. 저출산 추이	19
2. 주요국과의 비교	23
제3장 저출산 정책 비교검토	29
제1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30
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33
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40
제2절 해외의 저출산 대응정책	43
1. 일본	43
2. 미국	46
3. 프랑스: 가족정책의 법제화	47
4. 스웨덴: 남녀평등에 기반한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	48
5. 노르웨이: 육아휴직제도	49
6. 네덜란드(일/가정 양립정책)	50
7. 시사점	51

목차

제4장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52
제1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 체계성 및 세부 정책	53
1.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 체계성	53
2. 의정부시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정책	55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58
1.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 체계성의 문제점	58
2.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60
3.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성 문제	62
제5장 의정부시 저출산 정책제언	64
제1절 인터뷰 결과	65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정책제언	66
1. 저출산에 대한 의정부 인식 확산	66
2. 실제적 출산장려사업 추진	67
3. 청년을 위한 저출산 정책 추진	69
4. 현 의정부시 저출산 조례 및 지원사업 재검토	71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72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 연대회의	73
7. 저출산 조사 정례화를 위한 체계 구성	74
참고문헌	75
별첨 1	77
별첨 2	82
별첨 3	8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저출생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지 오래이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한국은 1970년 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 수준 이하인 2.08명, 2005년 1.07명으로 최저 수준이었고, 2012년에 1.29명으로 높아진 후 2015년 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가적으로 출생아 수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 전환, 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함

한국인구는 2100년 경에는 현재 5,000만명에서 절반으로 줄고, 2136년에는 1,000만 명으로 급락할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전망하고 있음

- 한편 UN은 한국의 인구 규모가 2050년대 초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다가 2100년에 3,850만 명으로 감소한 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함

출산율도 점차 증가하여 2100년에는 1.76명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2명대를 회복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서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데, 저출산은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맞벌이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져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가구 등의 증가로 출산률이 저하하는 현상을 의미함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측면과 다양한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등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제3차 기본계획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발표함(2020.12.15.)

제1차(2006~2010)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 제2차(2011~2015)에서는 임신·출산지원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제3차(2016~2020)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신혼 부부 주거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함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통해 저출산 정책 방향과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저출산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

재구조화 된 저출산정책 로드맵에서는 출산율과 출생아 수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국가주도의 출산장려 대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을 목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족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저출산은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구조적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결혼·출산·가족 등 삶의 양식을 둘러싼 시대변화와 청년 가치관 변화의 반영, 삶의 질에 대한 젠더적 접근의 강화를 제기함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 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됨

저출산 대응 주요 핵심정책으로는 ①임신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영아수당 신설 등으로 영아기 집중투자 ②아이와 함께하는 시간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③ 공보육 50% 확대와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등 돌봄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내실화 ④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중앙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저출산 정책추진방향 및 관련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2018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에서 2017년까지 12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126조 5587억 원의 예산을투입했으나,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17년에는 그 수치가 낮아짐

출생률 수치가 낮아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및 육아 세대 25~45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한 결과, 과반을 넘는 59%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모른다”라고 답했고, 저출산 대책을 “안다”라고 응답한 이들 중 “정부 정책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해, 국민이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정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서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 명 회복, 자녀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가정 양립일상화 등의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과제를 통해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데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함

2. 연구의 목적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됨.

즉, 정부의 전국적·획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저출산 장기화 및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 노동력 부족,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국가로 변화, 잠재성장을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해 중앙정책과 지자체의 시책 간 연계강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함

- 의정부시도 저출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초저출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의정부시의 저출산 실태와 출산률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으로 저출산의 개념과 관점, 저출산의 원인, 정부와 의정부시의 저출산 정책과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 연구내용

- 의정부시 저출산정책의 기본방향 분석
 - 의정부시 저출산정책의 방향성 분석
 - 국가정책으로서의 저출산정책과 의정부시
- 의정부시 출산지원정책 추진 유형 분석
 - 기존 출산지원정책의 유형분류
 - 출산지원정책의 타 자치단체 비교분석
- 경기도 차원에서의 출산지원정책 비교분석
- 바람직한 의정부시 저출산정책 방향성 설정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의 다각화
 - 정책연구 : 국가차원, 경기도차원, 의정부차원
 - 문헌연구 : 각종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 전문가의견조사 : 전문가회의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도출
 -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정책도출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사례조사 실시
 - 경기도 다양 사례 검토
 - 중요 지자체 사례 검토
 - 해외사례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토론회개최 및 중간, 최종발표회 실시

제 2 장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현황 및 이론적 분석

제1절 저출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이론적 검토

제3절 저출산의 국가적 현황

제1절 저출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

1. 저출산의 개념

□ 저출산의 개념

저출산()이란 국립국어원의 해석에 따르면, ‘아이를 적게 낳음’ 또는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등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한 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기를 낳는 비율이 낮음’ 또는 ‘일정 수준보다 아이를 적게 낳음’이라고 하면서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 현상을 의미하기함

저출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과 ‘초저출산’을 규정하는 국제적 지표가 개발되었음

- 먼저 저출산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기준을 따라야 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를 말함

-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대체인구수준(replacement lever)인 2.1명으로 나타나고, 이 수준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면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없는 정지인구(stationary population)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
- 이러한 합계출산율이 대체인구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나타나면 이를 ‘저출산’이라고 하고,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나타나면 이를 ‘초저출산’이라고 함

저출산의 기준에 따라, OECD에 보고된 출산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83년 기준 2.1명으로 ‘저출산’ 범주에 속하게 되었고, 2001년 기준 1.3명으로 ‘초저출산’ 범주에 속하게 되면서 최근까지 ‘초저출산’ 국가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저출산 논의의 등장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은 197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남

UN 세계인구정책보고서(2005)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자국의 출산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국가가 1976년 기준 4개국(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7개국¹⁾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음(손연정 외, 2018)²⁾

그러나 개별 국가들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자 처음부터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한 것은 아님

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면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게 됨

- 본격적인 저출산정책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확인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권 신장,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의 개선, 양성평등과 같은 국제노동기준의 방향성과 비슷한 정책들이 담겨 있음(기획재정부, 2010)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정전 시기에 들어간 1955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베이비 붐’ 현상과 함께 선진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른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연 3%에 이르게 되었음(손연정 외, 2018)

- 경제성장률은 낮아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3년 피임 보급 중심의 가족계획사업 10개년 계획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함
- 그 결과 1960년대 초 출산율은 평균 6.0~5.0명에서 1983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인 2.08명으로 급감하였음
- 그러나 인구억제정책은 1995년이 되어서야 폐지되었으며, 정부는 자국의 출산수준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음

200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20명으로 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법적 대안을 마련한 시기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음

2006년 시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기의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출산 양육을 둘러싼 사회제반시설을 확충하고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제도 확충을 통한 인구(합계출산율) 및 사회경제지표 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손연정 외, 2018)

1)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등

2)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1975년 ‘너무 높음’, 1986년 ‘너무 높음’, 1996년 ‘적정’, 2005년 ‘너무 낮음’, 2013년 ‘너무 낮음’으로 보고되었음(UN, 2013; 손연정 외, 2018)

2. 저출산 정책의 의의

□ 저출산 정책의 개념

저출산 정책이란 출산을 저하를 억제하고 출산율을 증가(장려)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함(이미옥 외, 2015; 강영주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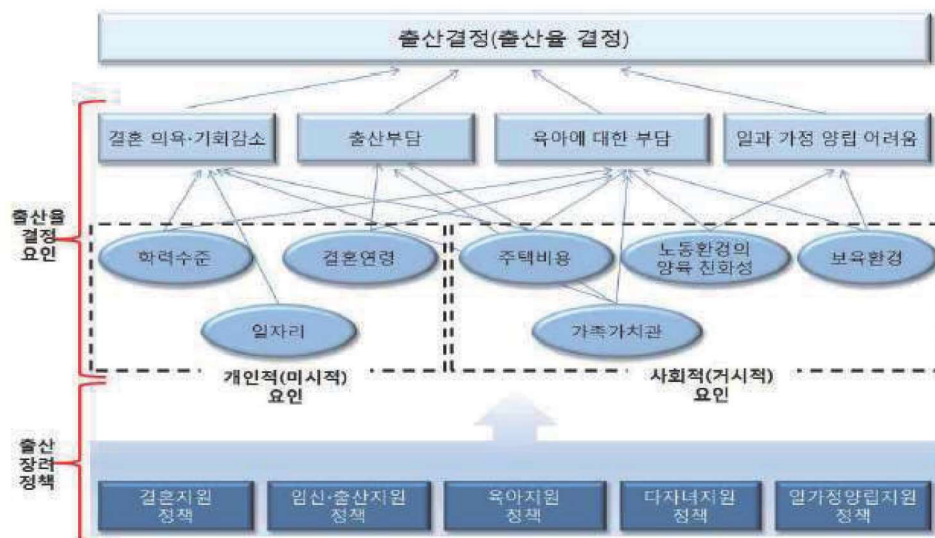
- 부모들이 가지는 자녀양육의 부담은 덜어주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부모들의 긍정인식을 장려하여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출생자 수 감소를 위한 인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인구억제정책을 추진

- 이후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정책, 모성보호정책, 일 가정양립정책 등이 저출산 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편, 저출산 정책은 사회서비스(또는 사회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란 광의의 개념에서는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하며,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제공 등을 포함함(윤영진, 2010)



자료: 강영주 외(2017), p.44

[그림2-1] 저출산 정책의 범위 및 유형

저출산 정책은 가족형성 지원부터 출산지원, 보육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에 관한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앞에서 언급한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출산의 다양한 사회구조적 행태적 원인들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유형화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으나 생애주기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화 방식이 대표적인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 정책은 결혼지원정책에서부터 임신 출산지원 정책, 육아지원정책, 다자녀지원정책을 아우르며 그리고 최근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까지 포함됨

□ 저출산 정책의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목적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저출산 대책은 기본법 제7조~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추진하며,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저출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역 유형화

지역별 저출산 정책의 출산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출산 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출산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에 적합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영주 외, 2017)은 저출산 정책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산율의 패턴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화에 따른 출산요인의 비교추이를 구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정책 수단을 제시하고자함(강영주 외, 2017)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율 진입값이 1.3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율은 0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지자체를 유형화 함(강영주 외, 2017)

- 1유형 지역(저출산지역)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초저출산율을 상회하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2유형 지역(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은 초저출산율에 접어들었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3유형 지역(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은 현재 출산율은 초저출산율을 상회하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4유형 지역(초저출산지역)은 현재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에 접어든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요구되는 지역

<표 2-1> 지역 유형 구분기준 및 인구변화 특성

유형	기준	인구변화	특성
1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	초저출산율을 상회하며, 출산율 증가	저출산지역
2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	초저출산율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증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초저출산율 상회하고 있지만, 추후 출산율이 감소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초저출산율에 진입했으며, 출산율도 감소	초저출산지역

자료: 강영주 외(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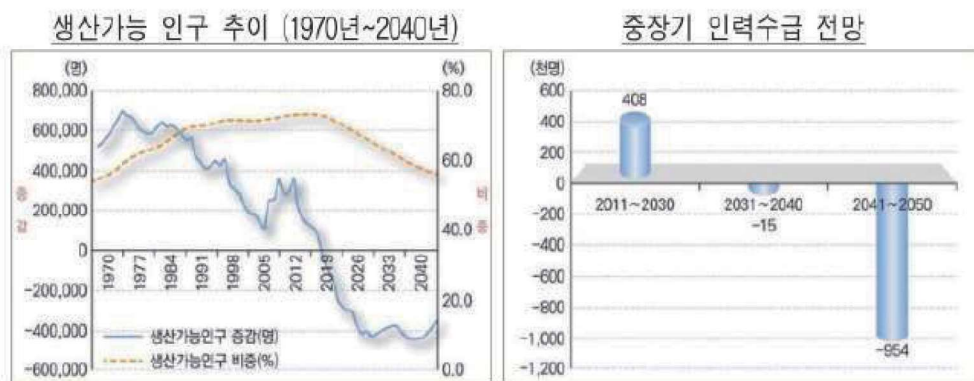
3. 저출산 이슈에 대한 심각성

□ 거시적 차원(사회구조적 측면)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문제, 구매력 낮은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 투자 증가율이 지속감소하는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경제 문제, 연금 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하고 수급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하는 재정부담 문제 등 국가의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킴

노동력에서 안주엽(2005)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2년 후인 2020년에는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축소될 경우 노동과 투자가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 성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노동 인구 감소와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 증가로 소비·투자 증가율이 지속해서 감소하여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소비증가율은 2001~2010년 동안 3.77%에서 2011~2030년 동안 3.01%, 2031~2060년 동안 1.41%로,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동안 4.42%에서 2015~2060년 동안 1.0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6).



자료: 강영주·최지민(2018) p.10

[그림2-2] 생산가능 인구 추이 및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재정부담으로 국민연금은 2044년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적립기금을 소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 행태를 유지하면 2035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상황이라 젊은 층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을 곧바로 부과 방식으로 바꿀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203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 예측(2018)에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5명)이 계속 된다는 전제로 2040년 15%, 2050년 21.5%로 급증하게 되고 2060년에는 보험료율이 29.3%에 달할 것으로 추산해, 미래 세대는 월 소득액의 3분의 1정도를 노인 부양료로 내야 할 수도 있음

<표2-2> 저출산 시 부과 방식 비용률(단위: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저출산 대안	5.2	9.0	15.0	21.3	28.6	33.3	35.2	34.9
출산율1.05 대안	5.2	9.0	15.0	21.5	29.3	34.7	37.7	37.7

자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2018)

병역자원에서는 저출산 장기 지속으로 인해 현행 21개월 복무기간 기준에 따르면 병역 자원 부족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규모로는 2020년부터 시작하여 1만 6천명, 2050년 5만7천명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병역정책 운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자체의 소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마스다 히로야, 2015; 유선종, 2018)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도 문제이지만 인구가 점점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음

대도시에서는 몰려든 인구를 받아들이긴 하나 재생산은 못하게 되므로 결국 대도시도 지방도 모두 위축된다는 것임

□ 미시적 관점(개인적 측면)

저출산은 사회적, 거시적 측면에서 큰 부작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의 차원에서도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득은 감소하는 동시에 부양부담은 늘어나 1인당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IMF, 2004)

또한 저출산으로 가구형태가 변화하여 1인 가구 및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족 간 사적부양 기능이 약화될 것이며, 이를 대체할 공적 부조가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과 공공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실정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노후준비율은 못 미쳐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됨(정경희, 2009)

따라서 노인들은 소득과 건강 불안에 노출되기 쉬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출산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행태는 개인의 선호체계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졌음을 의미함
결혼과 육아로 인한 즐거움보다 물질적 가치나 여가 추구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
이나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유현중, 2016b).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사회부담가중의 이유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며, 선진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 구조적인 인구 정책비전이 출산율 제고와 노인빈곤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있음

이들은 우리와 비슷한 초저출산의 상태를 경험했었으나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출산율을 반등시켰으며. 스웨덴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1997년 출산율이 최저점(1.5명)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출산율을 회복하였음

스웨덴의 정책 확대는 출산율 상승 뿐 아니라 출산간격과 변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며(Anders Buorklund, 2006; 최영·김슬기, 2017 재인용) 영국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하락한 바 있으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였음

프랑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모토 아래 정부의 포괄적, 적극적 지원전략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인 바 있음(정성호, 2013. 고승연, 2014).

반면 같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경우 10년 동안, 기간합계출산율은 1.25명 수준이었고 최근에 소폭 상승하여 1.4명에 이르렀으며 이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ISTAT, 2016; United Nations, 2016).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이탈리아의 저출산 정책의 부재가 지적되었음

이탈리아의 가족정책은 범위가 좁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예산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Saraceno, 1998: 전광희, 2017 재인용). 이를 통해 국가정책 요인이 상당한 정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박종서, 2009)

국가 정책은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출산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윤승희(2014)의 연구는 국가의 돌봄 체계를 유형화하였는데, 각 유형에 따라 계층별 출산율 차이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국가의 돌봄 체계의 특성이 계층별 출산율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은 국가 정책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음

물론 출산율 제고 정책을 포기하고 인구 정책에 있어 강소국가를 지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가 상당부분 존재함

이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출산율 반등 결과를 이뤄낸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제2절 저출산 정책의 이론적 검토

□ 저출산 정책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①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크게 구분 가능함
- ② 저출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정책 수혜율, 국민의 인식 변화, 정책 수용도) 관련 연구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관련 연구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책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였음
-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보다 컸으며,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김민곤·천지은, 2016)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이석환, 2014)가 존재함
- 다만, 허만형·이정철(2011)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정책 도입 후 3년간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나타났음

□ 저출산 정책이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저출산 정책이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기혼여성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문화 지원 정책, 모자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침(유계숙, 2009; 정성호, 2012)

- 세부적으로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가능성을,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유계숙, 2009)

- 또한, 이미옥·명성준(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보육 비용지원 정책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 보육 비용지원 정책과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지원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

저출산의 원인은 거시적 요인(학력, 개인의 건강, 소득 등 미시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 가족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음

- 정책적 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임신·출산지원 정책, 보육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강영주 외, 2017)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큰 효과를 보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추진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며, 정책 효과 평가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강영주 외, 2017)

<표 2-3> 저출산 정책 관련 선행연구 결과

연구유형	연구자	저출산 정책	연구 결과
①	허만형·이정철 (2011)	출산장려금 정책	- 출산장려금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 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준이 점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다양했지만 그 액수 자체가 출산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분할급 방식과 일시급 방식이 혼용방식에 비해 정책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
①	이석환 (2014)	출산장려금 정책(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	-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음 -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보다 출산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연구유형	연구자	저출산 정책	연구 결과
			- 기초자치단체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혼인율, 가임여성 비율, 교육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남
①	김민곤·천지은 (2016)	출산장려금 정책	-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치구별 소득 수준,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수준, 의료시설수준 등의 변수들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유계숙 (2009)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모자 건강관리 지원정책, 불임부부 지원정책	- 모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여줌 -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며, 첫 자녀의 출산은 10.5배 높이는 효과를 나타냄
②	정성호 (2012)	경제적 지원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육아지원시설 확충 정책, 출산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문화 지원 정책	-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정책이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기혼여성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 문화지원 정책이 출산계획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②	최상준·이명석 (2013)	출산·양육 지원정책	-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지원 정책 중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육지원 정책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변수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남
②	이미옥·명성준 (2015)	임신·출산지원 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정책(중앙정부), 보육 비용지원 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경우, 일-가정양립지원 정책과 보육 비용지원 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경우, 보육 비용지원 정책과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 - 지방정부의 보육 비용지원 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강영주 외(2017)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 추가 보완

제3절 저출산의 국가적 현황

1. 저출산 추이

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30년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미만) 상태

-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2003년 1.19명으로 5년 만에 0.36명이 급감
- 2003년 초저출산 상태로 전환된 이후 1.1~1.3명 사이에 증감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하락세가 뚜렷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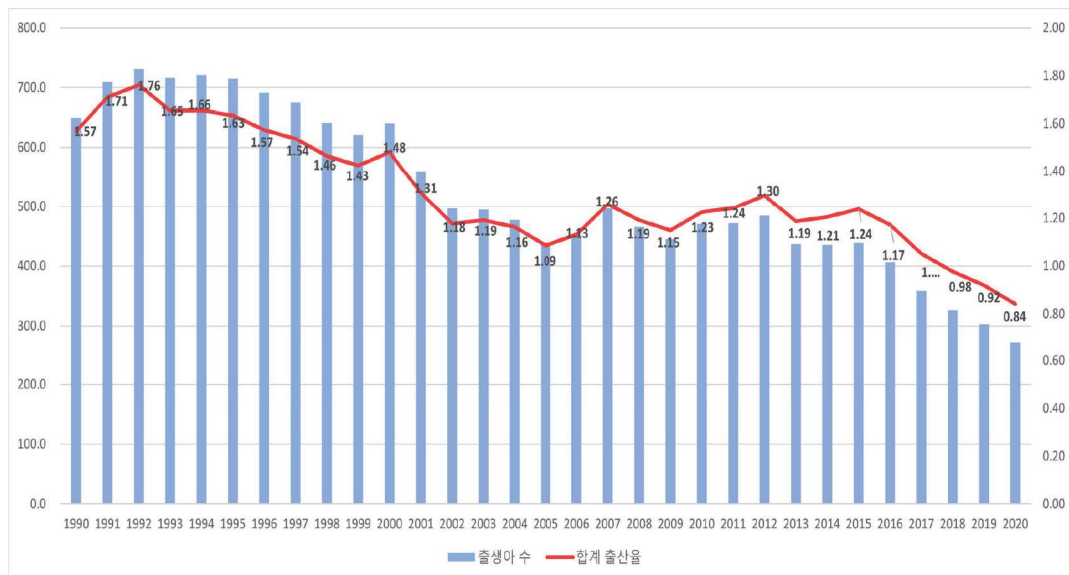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 미만의 하락하였으며, 출생아수가 30만명대로 진입

- 1996년 60만명대,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 2018년 30만명대, 2020년 20만명대로 급락

* 2020년 출생아수는 1991년~1995년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침

<그림 2-3>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1990-2020)

(단위: 천명, 명)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나. 자연증가

□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은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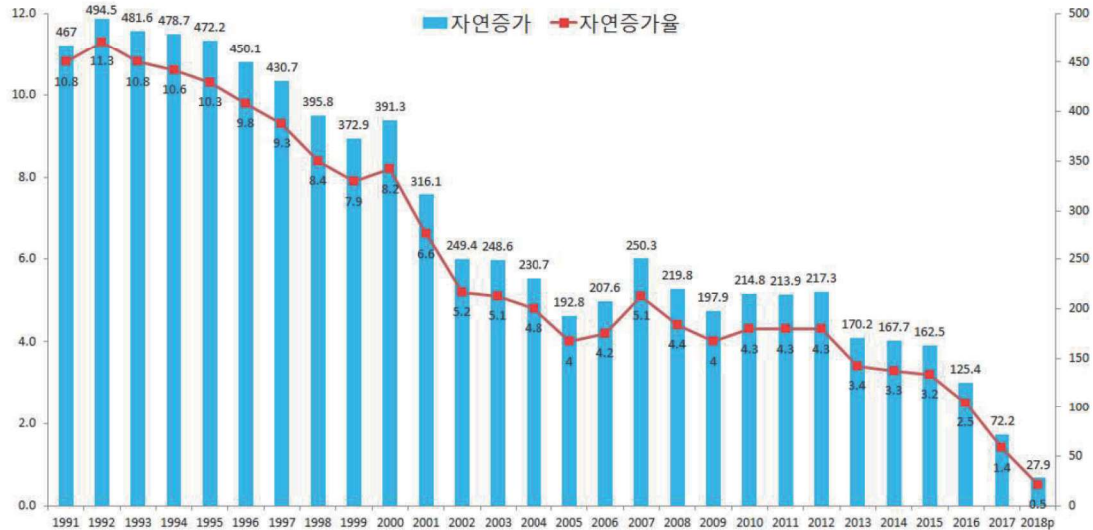
자연증가 규모는 1991년~1997년간 40만명대에서 1998~2001년간에는 30만명대로 하락, 2017년 부터는 10만명 이하로 급감하였음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꾸준한 감소세를 부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1명 이하로 하락함

- 즉 자연증가와 자연감소가 반전되는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 발생

<그림 2-4> 연도별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추이(1991-2018)

(단위: 명,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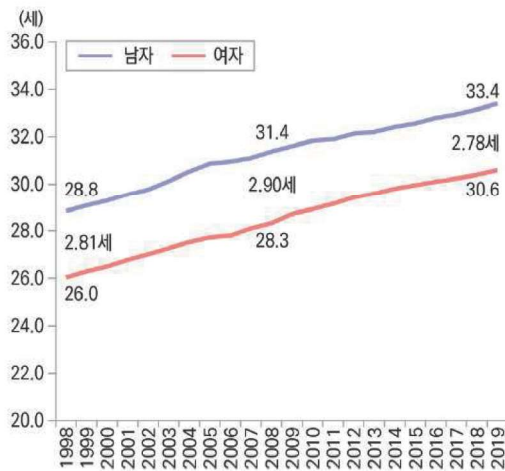
자료: 박선권(2019),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다. 초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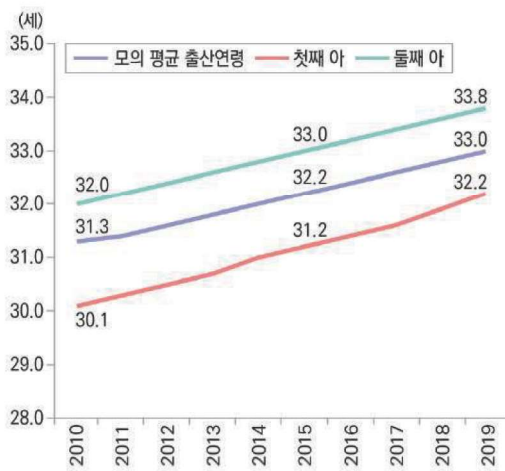
□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으로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남성의 초혼연령은 2019년 기준 33.4세, 여성은 30.5세이며, 남녀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2010년 대비 2.93세에서 2019년 기준 2.78세로 감소하였음

<그림 2-5> 평균 초혼 연령:2010~2019



<그림 2-6> 출산모의 평균 연령



라. 출산 연령

□ 초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 모의 평균 연령도 동일하게 상승 추세를 보임

2019년 기준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3.0세로 2010년에 비해 1.7세 상승하였음

- 출산모의 연령은 첫째아의 경우 32.2세, 둘째아 33.8세, 셋째아 35.2세, 넷째아 26.4세
- 첫째아 출산모의 연령은 2010년 30.1세에서 2019년 32.2세로 초산 연령이 2.1세 상승하였음

<표 2-4> 출산모의 평균 연령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31.3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	33.0
첫째아	30.1	30.3	30.5	30.7	31.0	31.2	31.4	31.6	31.9	32.2
둘째아	32.0	32.2	32.4	32.6	32.8	33.0	33.2	33.4	33.6	33.8
셋째아	34.0	34.1	34.2	34.4	34.5	34.6	34.7	34.8	35.1	35.2
넷째아 이상	35.8	35.9	35.9	35.9	35.9	36.0	36.1	36.1	36.7	36.4

자료: 통계청(2010~2019), 출생통계 자료

마. 시군구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영광군(2.54명)과 해남군(1.89명),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강원 인제군(1.64명) 순으로 나타남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인 전남 영광군은 인구 대체 수준을 상회하며, 상위 10위를 기록한 시군구 모두 1명 대를 상회함

- 출생아 수 상위 10위 시군구는 다수의 지역이 경기도 내 시군으로 확인됨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경기 성남시 순으로 출생아 수가 많음

상위 10위 시군구에서 태어난 출생아(58,472명)가 전체 출생아의 19.3% 차지함

- 의정부시는 2019년 기준 2,418명에 출생아가 태어났으며,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나타남

경기도 합계출산율 평균(과천시, 0.78명)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우리나라 평균에 근사한 수치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초저출산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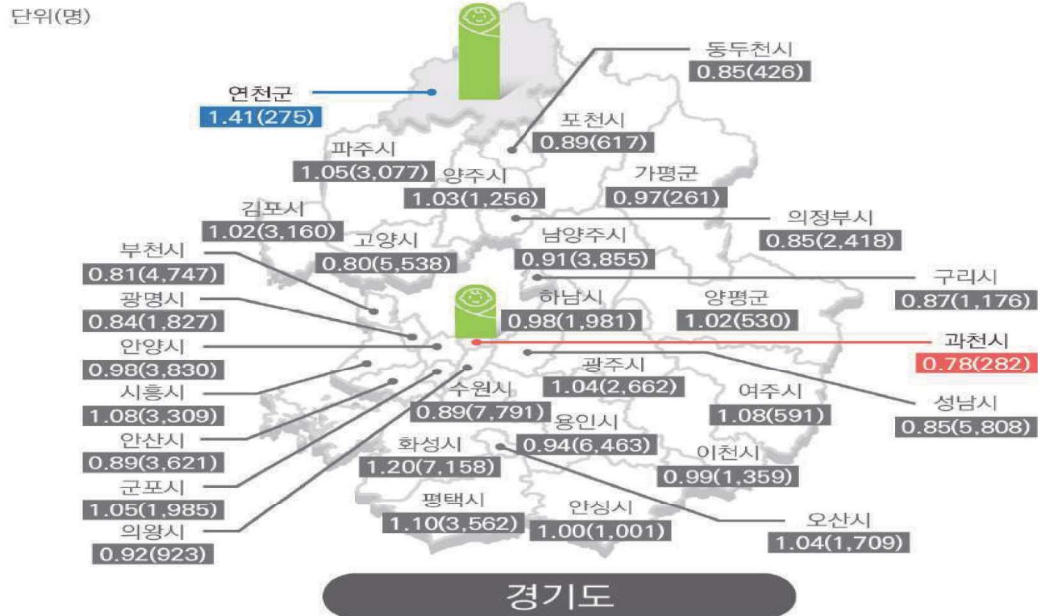
<표 2-5>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상위 10위 시군구

(단위: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인구 1천명당 명)

순위	시군구	합계출산율			시군구	출생아 수		
			출생아 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	조출생율
	전국	0.92	302,676	5.9	전국	302,676	0.92	5.9
1	전남 영광군	2.54	570	10.7	경기 수원시	7,791	0.89	6.6
2	전남 해남군	1.89	490	6.9	경기 화성시	7,158	1.20	9.1
3	경북 의성군	1.76	255	4.9	경기 용인시	6,463	0.94	6.2
4	전북 진안군	1.69	151	5.9	경남 창원시	6,249	1.01	6.0
5	강원 철원군	1.65	349	7.7	경기 성남시	5,808	0.85	6.2
6	강원 인제군	1.64	255	8.0	경기 고양시	5,538	0.80	5.6
7	전북 순창군	1.64	181	6.3	충북 청주시	5,460	1.00	6.5
8	경북 청송군	1.62	116	4.6	충남 천안시	4,834	1.02	7.5
9	전남 완도군	1.57	282	5.6	경기 부천시	4,747	0.81	5.7
10	강원 화천군	1.57	195	7.9	서울 송파구	4,424	0.77	6.7
기타	경기 의정부시	0.85	-	-	경기 의정부시	2,418	0.85	-

자료: 통계청(2010~2019), 출생통계 자료

<그림 2-7> 경기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2019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 주요국과의 비교

가.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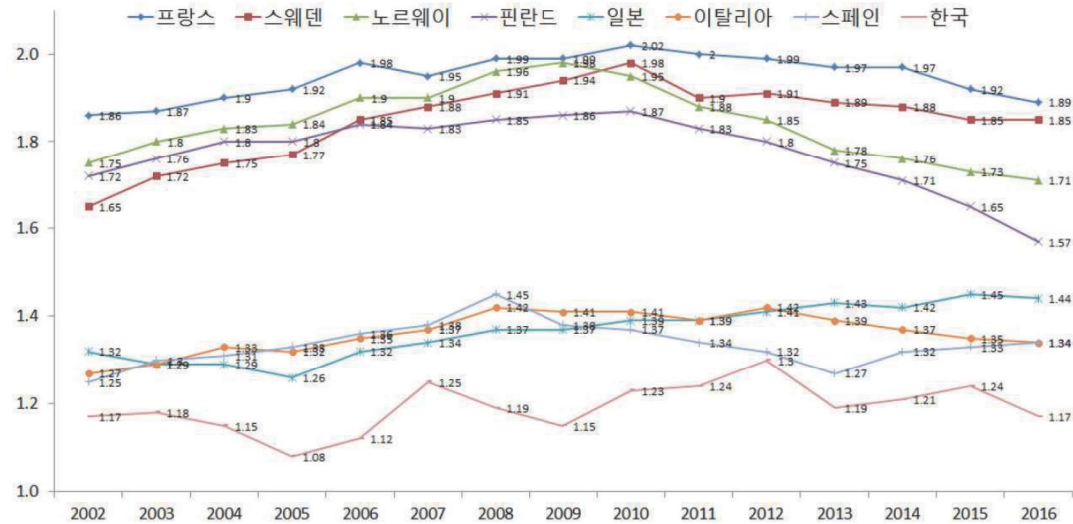
-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현저한 초저출산국으로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9명으로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국가

- 15년간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프랑스(1.95명), 스웨덴(1.85명), 노르웨이(1.84명), 핀란드(1.78명) 등으로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반대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1.37명), 이탈리아(1.36명), 스페인(1.34명)으로 한국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긴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재확인 가능함

<그림 2-8>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2002-2016)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나. 혼인과 이혼

□ 2016년 기준 한국의 조혼인율은 5.5건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그림 2-7> 참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4~5.5건으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는 3.5건 이하로 매우 낮았고, 미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중국 등은 2배 이상

- 프랑스(3.5건), 노르웨이(4.5건), 스웨덴(5.4건), 핀란드(4.5건) 등은 한국에 비해 낮은 건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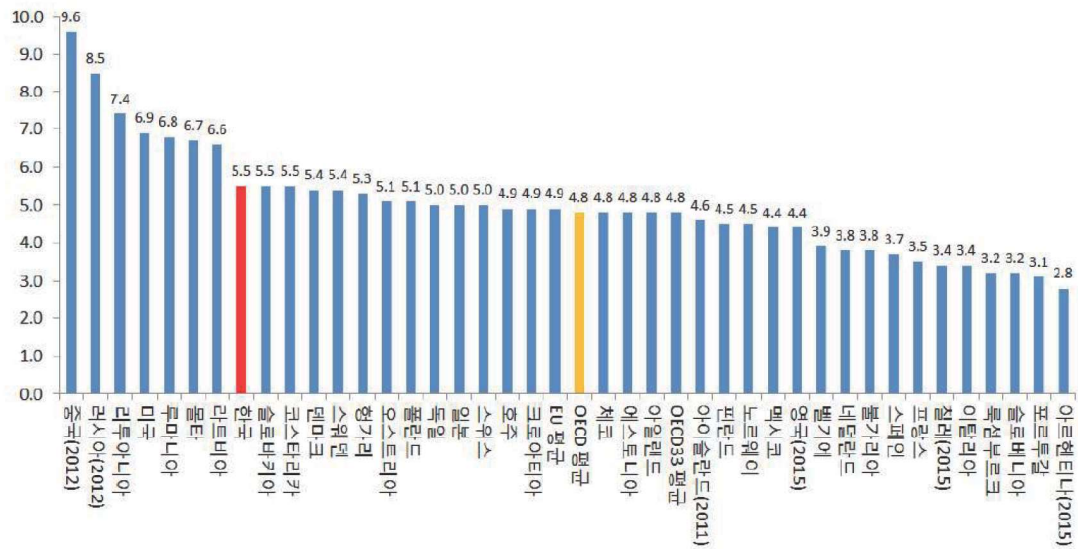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한국의 조이혼율은 2.1건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그림 2-8> 참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6~2.5건이며, 칠레, 아일랜드, 몰타, 멕시코는 1건 이하로 매우 낮았고, 덴마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미국, 러시아 등은 3건을 상회함

- 프랑스(1.9건), 노르웨이(1.9건) 등은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스웨덴(2.4건), 핀란드(2.5건) 등은 OECD 평균 보다 낮았으나, 한국과 비교해 높은 건수를 보임

<그림 2-9> 국가별 조혼인율(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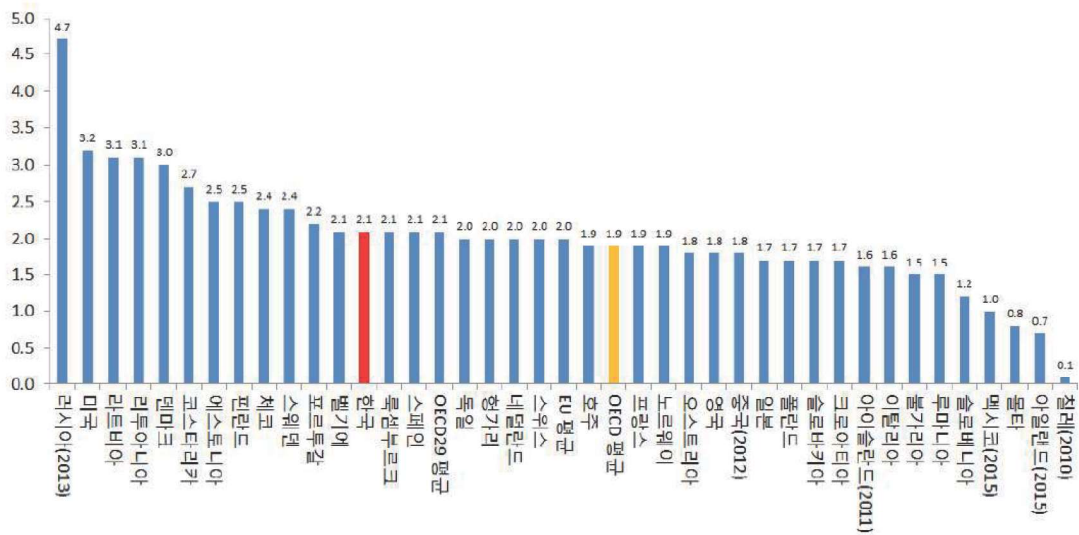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그림 2-10> 국가별 조이혼율(2016년 기준)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다. 혼인 연령

□ 2016년 기준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과 유사(<그림 2-9> 참조)

대부분의 국가들이 27~33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 등은 평균 28세 미만으로 낮았고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평균 32세를 상회함

- 프랑스(32.2세), 노르웨이(31.9세), 스웨덴(33.8세), 핀란드(31.3세) 등은 한국의 평균과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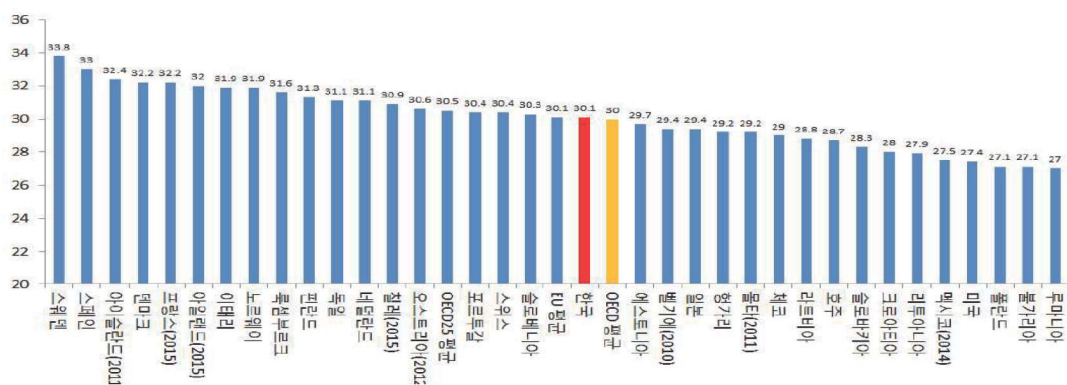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 보다 약간 높음(<그림 2-10> 참조)

대부분의 국가들이 29~35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폴란드, 미국은 평균 30세 미만으로 낮았고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은 평균 34세를 상회함

- 프랑스(34.4세), 노르웨이(34.7세), 스웨덴(36.5세), 핀란드(33.7세) 등은 한국의 평균과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보임

<그림 2-11> 국가별 여성 초혼 평균 연령(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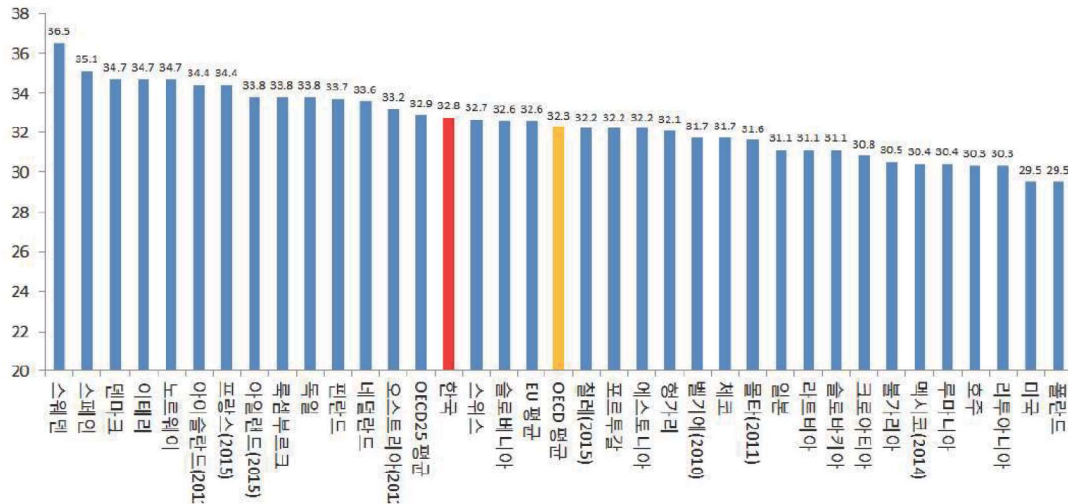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그림 2-12> 국가별 남성 초혼 평균 연령(2016년 기준)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라. 출산 연령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그림 2-11> 참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32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0.4세였음

-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8세 미만으로 낮았고,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32세 전후였음
- 프랑스(30.5세), 노르웨이(30.8세), 스웨덴(31.1세), 핀란드(30.8세) 등은 OECD 평균 보다는 높았고 한국 보다는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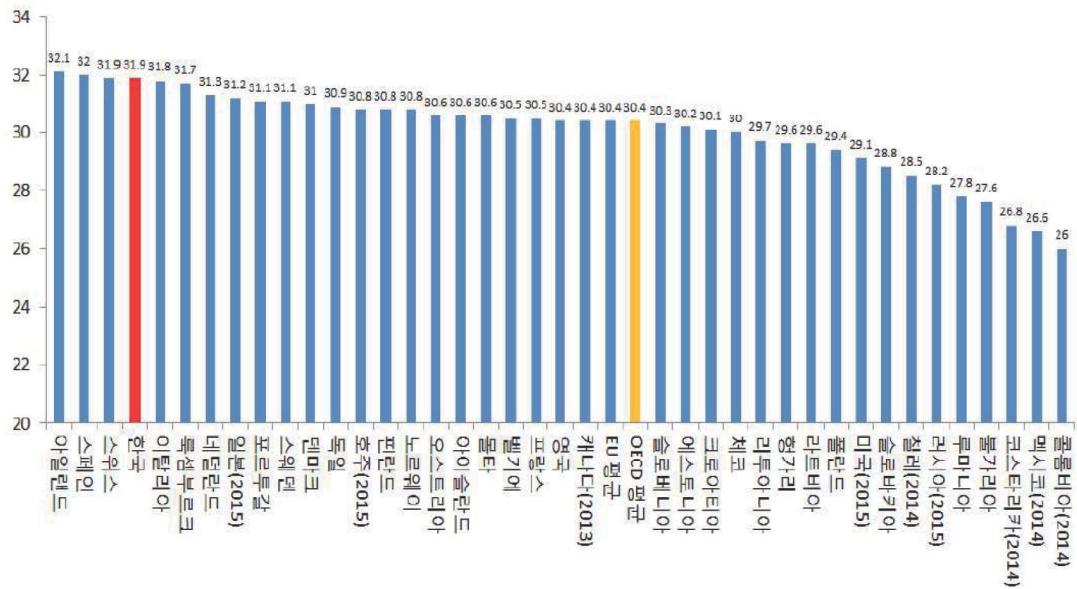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음(<그림 2-12> 참조)

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28.9세였음

- 불가리아, 루마니아, 미국,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27세 이하로 낮았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30~31세였음
- 프랑스(28.5세), 노르웨이(29.0세), 스웨덴(29.2세), 핀란드(29.0세) 등은 OECD 평균과 유사했음

<그림 2-13> 국가별 출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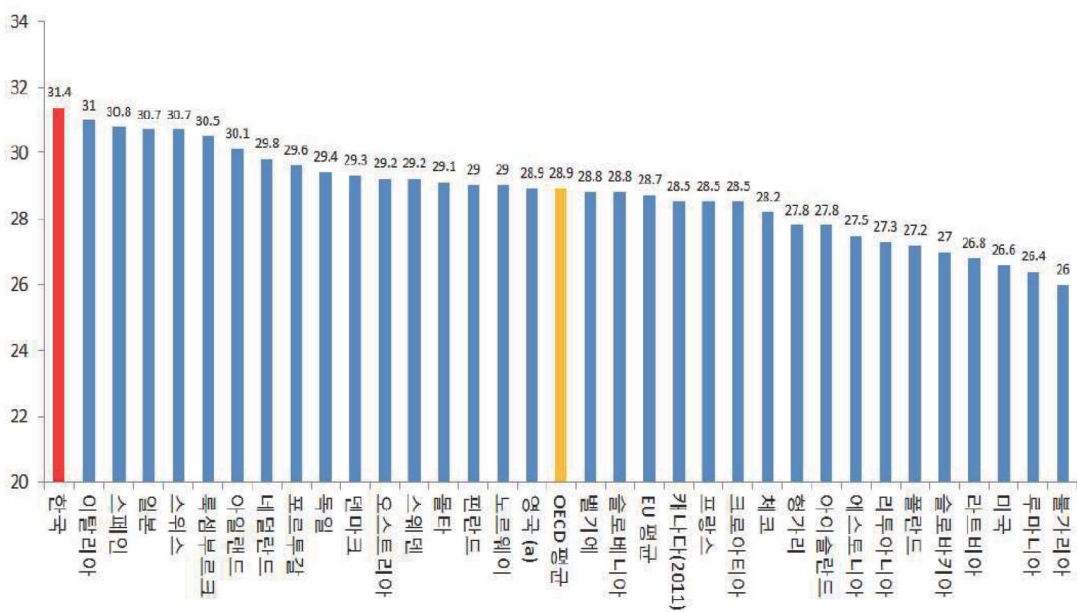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그림 2-14> 국가별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년 기준)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박선권(2019)

제 3 장

저출산 정책 비교검토

제1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제2절 해외의 저출산 대응정책

제1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가.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체계

-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근거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사항을 제시 및 관리하고 있음(고경훈, 2017:50)

주요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첫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중 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넷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째,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임³⁾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23.>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 1. 18., 2012. 5.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 5. 23.>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23.>

3)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3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3조)

즉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 대통령과 위원 7개부처의 장관,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운영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복지부장관/위원:6개부처 차관, 민간위원 32인), 7개분과(미래기획, 세대공감, 지역상생, 일/생활균형, 성평등노동권, 가족다양성, 아동돌봄)로 구성되어 있음⁵⁾

사무처는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홍보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총괄과, 세대공감과, 미래분석과, 일생활균형과, 평등권리과로 구성되어 있음⁶⁾

나.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개요

- 정부는 2005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⁷⁾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였음

동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⁹⁾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¹⁰⁾

- 이에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운영중에 있음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organizationFunction.do> (접속일: 2022.03.10.)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organizationFunction.do> (접속일: 2022.03.10.)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organizationFunction.do> (접속일: 2022.03.10.)

7)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1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1조)

8)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

9)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1조)

10)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

2006년 1차 기본계획 수립 후 2009년에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이 제시되었고, 3차 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에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수립되어 실질적으로는 현재까지 6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김우림, 2021: 15 재인용)

1차·2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저출산 현상이 아동양육가구의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양육 부담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관의 약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음(김우림, 2021: 15 재인용)

하지만, 3차 기본계획에서는 1, 2차 계획의 문제인식과 더불어,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저출산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4차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세대에 걸친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문화·가치관적 측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았음(김우림, 2021: 15 재인용)

<표 3-1>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제1차, 제2차 기본계획(2006-2015)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제4차 기본계획(2021-2025)
① 경제사회적요인 -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 자녀양육 부담 증가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② 가치관의변화 - 결혼관의 약화	① 미시적요인 - 결혼비용 - 자녀양육 교육비 - 일가정양립 - 임신·출산 건강 ② 거시적사회구조적요인 - (경제) 경기, 주택시장 - (교육) 교육시스템 - (노동시장) 학벌주의, 실업, 고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 (지역사회)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및 인프라 - (문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 (가족) 가부장적 문화, 남성육아·가사 참여	① 사회경제적요인 -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 높은 주택 가격 -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 가정양립의 곤란 - 잔존하는 돌봄 공백 ② 문화·가치관적 측면 -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16

□ 이러한 저출산 현상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기본계획별 정책의 초점 및 방향성이 유사하면서도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음

제1차 기본계획이 저소득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보육 지원이 중심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제2차 기본계획은 일하는 가정에 초점을 두고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음

제3차 기본계획은 청년 일자리 · 주거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으로 수정계획인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국가 실현”을위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제4차 기본계획은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개인 삶의 질을 제고에 방점으로 두어 중점 과제들을 설정하였음

<표 3-2> 저출산 대책의 초점과 방향의 변화

제1차	제2차	제3차	제3차(수정)	제4차
저소득 가정에 초점, 정부 주도의 보육 지원 중심	일하는 가정에 초점, 범사회적 정책공조를 통한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청년 일자리 · 주거대책 강화, 사각지대 해소, 실천·문화 개선		
출산 장려, 결혼가족 및 3자녀 이상 다자녀에 초점을 둔 지원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 아이 중심 및 모든 형태 가족 포용	
노동력 · 생산력의 관점에 기반한 국가 발전 전략				개인 삶의 질 제고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17

나. 기본계획별 주요 내용

- 2006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의 저출산 대응관련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던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 · 교육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며(2006년 1,100개교 → 2010년 5,400개교, 전체보육시설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이용 아동을 30%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포함하였음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를 당시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1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던 2008년에는 기존의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한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

이는 당시 새정부의 보육지원 정책 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보완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확대하고(2008년 차상위 → 2009년 소득하위 5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급 및 임신부에게 산전검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한,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구분	제1차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수정)
목표	2006-2010년: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 → 2011-2020년: 출산을 회복	
추진 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주요 내용	- 아동수당 도입 적극 검토 -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률 30% -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 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 부담 경감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 대상 주택 특별 공급 - 다자녀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자격 부여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추진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상환방식 변경(2년 후 일시상환 → 장기분할상환)	- 영유아 보육·교육 확대(‘08년 차상위 → ‘09년 소득하위 50%)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차상위 이하 가정 만 0-1세아에게 월 10만원) -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 임신부 산전검사 20만원 지원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에서만 무료 → 민간/병원에서의 접종비 1/3 지원) - 신혼부부 연간 5만호의 주택마련 지원 -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부여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18

□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은 정부의보육지원정책 개편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2008년 발표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음

또한 산부에게 산전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 마련 지원,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새로마지플랜 2015’라는 명칭으로 발표되었음

동 계획은 육아휴직급여에 정률제(통상임금의 40%)를 도입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추가 확대(소득하위 50% → 소득하위70%)하며 가정양육수당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0-1세 월 10만원 → 0-2세월10-20만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3천만원→ 3.5천만원 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음

<표 3-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구분	내용
목표	2011-2015년 점진적 출산을 회복 → 2016-2030년 OECD 평균수준 출산을 회복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
주요내용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 양육수당 확대(0~1세 월 10만원 → 0~2세월10~20만원 •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백만원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19

□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2015.12.10.)은 ‘브릿지 플랜 2020’으로 이전의 기혼 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와 주거 등의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개선 및 비용지원 중심에서 실천 및 사회인식 변화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함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확대하였음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등 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아동양육가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 등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음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던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여 로드맵 및 수정계획(2018.12.6.)을 발표함

동 계획은 기존에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합계출산율 1.5명의 목표를 폐지하고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를 조기 달성(2022년 달성 → 2020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임금삭감이 없도록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유급 3일 → 10일)하며 남성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 외에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미혼모·부와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표 3-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구분	제3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수정)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 '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추진 과제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주요 내용	• 청년고용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 • 신혼부부 특화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임대 등 13.5만호 공급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초 등입학 전까지 확대 •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 10일)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지속 확충, 직장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 -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만원 →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사용기간 1년 → 2년 횟수2회→ 3회) • 국공립 · 공공형 ·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 확대('15년28% → '20년37% → '25년 45%), 초등돌봄교실 확충('15년24만명 → '20년26만명) • 난임부부지원패키지 도입 • 임신 ·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 신설	-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00인→ 300인이상) •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의 포용을 위한 교육 강화 • 임금 · 채용 성차별 해소, 고용평등 추진체계 확립 및 경력단절 예방 -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 신설 • 일자리위원회(청년일자리대책)와 협업, 청년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20

□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기 집중 투자를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을 인상(60만원 → 100만원하고 아동출생시 200만원의 일시금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며,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예술인 ·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보편적 육아휴직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외에도 2025년까지 공보육이용률 50%를 달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2025년까지 전용임대주택 2.75만호를 공급하며, 2022년부터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3-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구분	내용
목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추진과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영아수당 신설) 영아수당 도입('22년출생아부터 '25년월50만원목표로단계적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인상60만원→ 100만원, 아동 출생시 일 시금 바우처(200만원) 도입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아동의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50% → 80%(최대월120만원→ 15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우선지 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 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5-10% → 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육아휴직 권리 확대 • (보육 및 돌봄)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년) 및 온종일 돌봄지속확충 (~'22년 53만 명)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년) 및일정소득이하다자녀가구3자녀 이 상)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자료: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p.21

다. 중앙정부 출산지원정책¹¹⁾

□ 중앙정부는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확대. 현재에도 임신하였을 때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또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40만원,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11) 보건복지부(2022), 달리는 출산장려정책

영아수당

-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아동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그리고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높아짐. 기존에는 만 0세의 경우 월 2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제 24개월 미만인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 기존 15~20만원의 수당이 증액. 단, 만 2세 이상에서 만 7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음. 이러한 영아수당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예정.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증액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위에 알아본 영아수당 및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육아지원금. 본래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대상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 이때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150, 최소 70만원)를 지급했는데.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를 지급. 그러나 2022년부터는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음

3+3 부모 육아휴직제

-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중,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새롭게 신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 한도는 첫 달에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 해당 한도 내라면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

- 육아휴직 지원금도 2022년부터 신설된 제도. 이 제도는 부모가 아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지원금을 받는 것. 대상 기업은 1년 동안 달마다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음. 뿐만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 추진한 출산지원정책 중 비용, 돌봄, 문화, 기반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리

〈표 3-7〉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우수사례

구분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 내용
비용	경남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임산부 또는 다자녀(2명이 상)가족, 임산부 또는 다자녀 포함한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금액의 10%이상 할인 - (Ⅰ형) 103개 업체, 10%~50% 할인 (Ⅱ형)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숙박할인
돌봄	강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및 둘째아 이상 출산모 큰아이 돌봄서비스
	서울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엄마모임을 통한 사회적지지 제공 -보편방문(출산후 4주 이내 1회) -지속방문(출생아 만2세 미만시 까지 25회) -엄마모임(5주 간, 주 1회)
	서울	중구	학교안팎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돌봄 필요 초·중·고 대상 -교육청과 협약 통해 학교안 돌봄교실 운영, 학교밖 돌봄센터 및 틈새돌봄 운영
	광주	광산구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일 당시 부모 또는 이용 아동 광산구 거주 병원 입원 만12세 이하 아동 병원입원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시간 : 08시~20시, 1일 1회 최소 4시간~8시간 이하 -이용금액 : 1시간 1,300원~6,500원(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문화	부산	-	핑크라이트 사업	도시철도 IOT기반 임산부 자리 양보 안내시스템 운영 -발신기(9천원) 소지 임산부 탐승시 핑크라이트 -시, 부산교통공사, 병원, 보건소 등 협력체계 구축
기반	서울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시스템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사용자 맞춤형(거주자 등) 정보제공 모자 보건서비스(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유축기 대여 등) 온라인 신청 등

자료: 1) 거제시, 출산/보육, 행복키움프로젝트 시책안내,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Ⅰ형)
(http://welfare.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0802001006000, 2019.11.21. 인출).

2) 거제시, 출산/보육, 행복키움프로젝트 시책안내,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Ⅱ형)
(http://welfare.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0802001007000, 2019.11.21. 인출).

3)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https://ourbaby.seoul.kr/program/info>, 2019.11.21. 인출).

4) 광산구, 뉴스·소식, 새소식, 2019년 광산구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gwangsan.go.kr/bb/bbBoard.php?action=view&pageID=gwangsan021020000&SEQ=619118655&boardID=NEWS_NEW 2019.11.20. 인출).

5) 비즈한국(2019.04.24.)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 되는 이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652>, 2019.11.20. 인출).

6)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2019. 6. 13.) 임신·출산 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웹·모바일 개설
(<http://blog.seoul.go.kr/221561255012>, 2019.11.20. 인출).

‘비용’ 분야는 경남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하여 추진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을 제시.¹²⁾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실생활과 밀접한 103개 업종 이용 금액의 10% 이상의 할인과 숙박업체의 할인을 제공하는 사업¹³⁾

‘돌봄’ 분야는 강원도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서울시 중구의 학교 안 밖 중구 모든 아이돌봄 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병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선정

- 강원도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과 둘째아 이상 출산모에 대해서 큰아이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서울시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조기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으로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 엄마모임을 제공.¹⁴⁾ 이 사업은 임산부가 산전, 산후에 겪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고 부모가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가정방문은 출산 4주 이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보편 방문 서비스와 아동의 건강발달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전부터 만 2세까지의 지속 방문 서비스 2가지가 있음.¹⁵⁾ 2013년 3개 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서울시 23개 자치구(송파구 제외)로 확대¹⁶⁾
- 서울시 중구는 9개 공립초 돌봄교실 전체에 직영으로 중구형 초등 돌봄사업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개 돌봄교실에 2명의 돌봄 교사가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교실 리모델링, 돌봄 전용 출입구·보안관실, CCTV 설치, 입·출입 시 학부모 안심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추진하는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우수사례로 꼽았음. 이 사업은 입원아동의 간병과 정서교감을 통한 놀이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용시간은 8시~20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최대 8시간. 1시간 이용가격은 1,300원이나 소득

12) CJ헬로, 경남/마산/하나방송(2019.11.11.). 임산부·다자녀 지원... 인구 늘리기 '승부수' (2019.11.20. 인출).

13) the 지방 포스트(2019.10.30.), 서울 중구 교육아동청소년과 '학교 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 (<http://www.localgov.co.kr/news/article.html?no=4307>, 2019.11.20. 인출).

14)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사업안내 (<https://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2019.11.20. 인출).

15)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방문과 엄마모임, 프로그램 안내 (<https://ourbaby.seoul.kr/program/info>, 2019.11.20. 인출).

16)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사업안내 (<https://ourbaby.seoul.kr/project/introduction/01>, 2019.11.20. 인출).

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은 1시간에 1,300원부터 6,500원으로 다양¹⁷⁾. 이는 맞벌이 가정과 같이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구의 돌봄공백을 경력 단절 병원아동보호사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¹⁸⁾. 광주광역시도 광산구에서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¹⁹⁾

‘문화’ 분야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 부산광역시는 2017년 말 지하철 내에 임산부 자리 양보 안내 시스템 ‘핑크라이트’를 설치. ‘핑크라이트’는 무선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한 후 버튼을 누르면 차량 내 수신기에 핑크빛 불이 켜지고 자리 양보 안내 음성이 흘러나오는 서비스.²⁰⁾ 2019년 8월부터 부산 지하철 전 호선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²¹⁾.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가 좌석을 양보받기 어렵고,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 지원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인 것을 분석되었음(국회포럼1.4·인구보건복지협회, 2018: 11). 부산광역시 자체 설문조사에서 임산부의 50% 이상이 핑크라이트를 인지하고 있고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승객도 편하고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들의 도입에 대한 요청 및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²²⁾

‘기반(인프라)’ 분야는 서울특별시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시스템 사업은 기반 지원의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서울시는 온라인상에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웹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던 임신·출산·육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민원 신청도 가능한 사이트를 오픈. 모자보건서비스 6종(임신준비, 임신·출산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환급서비스, 유축기 대여,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난임부부 지원 외 각종 교육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임신주수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²³⁾

17) 광산구, 뉴스·소식, 새소식, 2019년 광산구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gwangsan.go.kr/bb/bbBoard.php?action=view&pageID=gwangsan0201020000&SEQ=619118655&boardID=NEWS_NEW 2019.11.20. 인출).

18) 위키트리(2018.11.21.) 광주시 광산구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저출산 극복 행안부장관상 수상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84020, 2019.11.20. 인출).

19)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열린공간, [복지]“아이들 병원 입원해도 걱정 없이 맡기세요” 여성가족뉴스 (<http://www.gjwf.or.kr/familyNews/read/7963>, 2019.11.20. 인출).

20) 비즈한국(2019.04.24.)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 되는 이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652>, 2019.11.20. 인출).

21) 교통신문(2019.07.29.) 부산시, 이달부터 ‘핑크라이트’ 전 호선 확대 운영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63>, 2019.11.20. 인출).

22) 비즈한국(2019.04.24.)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 되는 이유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652>, 2019.11.20. 인출).

23)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2019.6.13.) 임신·출산 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웹·모바일 개설 (<http://blog.seoul.go.kr/221561255012> 2019.11.20. 인출).

제2절 해외의 저출산 대응정책

-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정책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하여 저출산 대응방식의 차이가 존재함
- 더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또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패키징하는 해외사례는 또한 드물지만, 해외 국가들에서 어떻게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구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1. 일본

가. 도토리현 출산장려 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도토리현의 인구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566,306명으로 일본 47개 현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현에 속하며, 2000년대 초까지 합계출산율이 1.50명 정도로 일본 전국 합계출산율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함

2005년을 기점으로 일본 전국 출산율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어,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2010년 9월 ‘육아왕국 도토리 건국 선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였음

□ 정책 방향 및 비전

도토리현은 2010년 9월 ‘육아왕국 도토리현’을 만들기 위한 건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이 선언에는 ‘도토리 육아부대’ 결성, ‘도토리 육아의 날’ 제정과 더불어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을 당부함

도토리현의 출산장려 정책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전반에 걸쳐 지원하며, 나아가 정부의 지원 외에도 현, 주민, 지원단체, 시정촌, 보호자의 의무 및 역할을 강조하였음

□ 주요사업 유형

돗토리 만남 서포트센터를 설립하여 만남 주선, 불임 치료비 비용과 임신 검사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음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전·산후 체계적 지원과 더불어 보육 무상화 정책 시행을 통하여 육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돗토리 육아 부대’ 육아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육아 지원 자원봉사자와 육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연계함

육아 휴직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육아 왕국 돗토리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정,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강좌 개설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

나. 도쿄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200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이었으며, 도쿄는 1.0명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3년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2004년 「소자녀화 사회대책 대강」 등을 발표함

도쿄는 정부차원의 정책 외에 독자적인 저출산 정책(「아기가 빛나는 거리 도쿄플랜」, 「복지 개혁 추진 플랜」)을 추진하였고, 더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을 도입함

□ 정책 방향 및 비전

도쿄시의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은 사회시스템 전체를 저출산과 소자녀화()를 전제로 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구축함

따라서 보육, 보건, 의료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거주지 정비, 교통안전,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환경적 기반정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맞벌이부모와 재택육아 전업주부 가정 모두를 포괄한 모든 육아가정을 정책의 대상으로 강조하였고, 아동과 부모뿐 아니라 ‘가정’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가정에 대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주요사업 유형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지역의 체계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 체제의 정비, 교육환경 정비 등 지역 내 안심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전·산후, 육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함

직장의 양육친화적 문화 정착, 도시형 보육서비스(야간 보육, 연장 보육 등) 사업을 시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함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아동학대 방지, 한부모가정의 자립 지원, 장애아 지원 등의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함

다. 츠키타카쵸 어린이 육아 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홋카이도의 츠키타카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2011년 인구 3,888명, 1,764세대이며, 아동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가구수나 가구당 평균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츠키타카쵸의 여성 취업률은 일본 전국 평균과 홋카이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육아가정 중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 육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정책 방향 및 비전

어린이 육아 정책의 기본이념은 ‘어린이와 부모와 지역에서 만드는 자연과 미소가 넘치는 마을’로서 지역의 육아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함

츠키타카쵸 단일의 정책보다는 상위 지자체인 홋카이도와 연계한 정책들과 홋카이도 내 각지 기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

□ 주요사업 유형

학동보육소 운영, 아동 대책 협의회 조성, 공립보육원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의 육아지원 체계를 구축함

지역 보건센터 설립, 유아검진, 임신부 건강검진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건강의 확보 및 증진함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도로교통 환경정비 등 지역 인프라 조성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함

2. 미국

가.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혼외출산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저소득층 아동 및 편부모가정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상기의 근로가능 빈민들의 빈곤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회문제들과 연관되고 심화되었으며, 공공부조제도가 복지의존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PRWORA(개인책임-근로기회조성법)의 개혁을 시행함

□ 정책 방향 및 비전

PRWORA를 통해 연방정부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 등 프로그램들을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함

아동복지 향상과 건전한 결혼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형성하도록 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강조함

□ 주요사업 유형

최장 5년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되 지원기간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주당 30시간 이상 원칙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여 가정의 자생력을 제고함

건전한 결혼을 장려하고 혼외 임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선정된 몇 개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매칭펀드를 지원함

나. 세제혜택과 일/가정양립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지원과 동시에 근로활동 참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정책 방향 및 비전

낮은 임금을 받는 19세 이하 또는 전일제 학생과 24세 이하인 자녀를 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함

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시행하고, 압축근무주(일주일 4일 근무), 직무공유(일주일 2.5일 근무) 등 출산 후 직장복귀와 탄력근무제의 시행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함

□ 주요사업 유형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교육비세액공제(HOPE scholarship, Lifetime Learning),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의료비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함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을 통해 출산 혹은 입양 여성에게 12주간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사용 후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전과 동일한 직급에 복귀한 것을 규정함

3. 프랑스: 가족정책의 법제화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프랑스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 출산율 감소 현상을 경험하였고, 1960년 2.73명에서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5명까지 감소함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1994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가족관련 연례회의(Conférence de la famille)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법제화하여 관련부처장관, 가족관련 단체, 사회보장기금대표들이 모두 참석하여 정부의 가족출산정책의 방향, 주요 정책 진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정책 방향 및 비전

프랑스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 강력한 출산정책을 추진함

가족수당과 함께 양육비용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다양한 가족급여(Prestation familiales, Family benefit)가 있으며, 가족급여에는 가족 규모나 소득을 고려한 재분배 기능의 제도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등으로 구분함

가족수당제도 이외에 육아휴직, 입양장려, 주택관련 지원제도, 사회보장기구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 등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주요사업 유형

가족수당, 다자녀가구보충수당, 가족지지도당, 적극적 연대소득, 영유아보육수당 등 자녀의 수, 가족의 형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함

자녀가 만 3살이 될 때까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 시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함

소득 및 자녀수를 기준으로 주택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자녀가족에 대한 주택보조금 및 주택제공 편의를 확대함

4. 스웨덴: 남녀평등에 기반한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스웨덴은 1960년대의 소극적인 가족정책에서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가족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갔으며, 합계출산율이 1992년 1.52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책 방향 및 비전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부모모두에게 아동 양육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킴

노동시장에서는 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 재산 유무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사업 유형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급여를 지급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전체 여성고용의 50% 수준)을 통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

유급 모성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부와 모 모두의 권리로 정착시켰고, 출산 이후 법으로 직장복귀를 명시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함

5. 노르웨이: 육아휴직제도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노르웨이의 육아 휴직 제도는 유럽에서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된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에 유급 육아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함

육아 휴직 제도가 출산장려만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임

□ 정책 방향 및 비전

노르웨이의 육아 휴직 제도에는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추가 휴가 제도 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양성평등이 강조되어 개별인 휴가보다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부모휴가가 강화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분담, 성평등 제고 등의 목표로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며, 가족형태, 다자녀 출산 및 입양, 부모의 소득, 독신 부모의 휴직까지 다양한 정책 수혜 대상을 고려하였음

□ 주요사업 유형

근로여성이 임금의 100%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고 1년간의 부모 육아휴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됨

다자녀 출산 또는 다수의 자녀를 동시에 입양할 경우, 자녀 1인당 5주간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가 적용되며, 80%의 임금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7주 간의 유급출산 휴가가 주어짐

근로시간계정(Arbeitszeitkonto, time-banking, 단위 기간 내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충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육아휴가 기간 중 시간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 자녀의 보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음

6. 네덜란드(일/가정 양립정책)

□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가부장적 전통가치가 강한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보육시설의 확충, 다양한 휴가제도 등의 정책이 도입되었음

□ 정책 방향 및 비전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를 택할 수도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었음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인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역시 책임을 공유한다는 생각 아래 아동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이 시행됨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다양한 휴가제도와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함

□ 주요사업 유형

Part-time plus라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시장에 파트타임 노동을 정착시키고, 파트타임 업무를 보다 비중 있는 역할을 맡도록 유도하였음

직장 내 보육시설 제공 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주들의 보육시설 제공 장려를 촉구하였음

지방자치 지역마다 청소년가족센터를 설립하여 정보 제공,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족과 관계된 일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가족’을 ‘양육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양육보조금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수령액도 증액함

7. 시사점

□ 육아의 책임을 부와 모가 함께 공유하고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출산 후 법으로 명시한 직장복귀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율을 높이고,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직장복귀를 보장하여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강력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함

공공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으로 여성에게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어린 자녀의 보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함

□ 전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저출산 대책 시행으로 지역의 역량을 집중

광역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육아왕국’의 건국 선언을 발표했으며, ‘육아의 날’ 제정, ‘육아부대’ 결성 등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전체의 협력을 유도한 정책시행으로 지역의 역량을 집중함

□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한 종합적인 지원

단지, 가임여성, 임산부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벌이부모, 재택육아 전업주부 등 아동과 부모뿐 아니라 ‘가족’과 ‘가정’ 자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등 생활밀착형 종합적인 지원

제 4 장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제1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의 체계성 및 세부 정책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제1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 체계성 및 세부 정책

1.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 체계성

가.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

- 의정부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7년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²⁴⁾

지원조례의 구성은 총칙,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구성

구분	내용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 기업·단체 등 지원 제6조 시민참여 등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위원회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위원의 해촉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제11조 결혼지원 제12조 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15조 인구교육 등 제16조 홍보 제17조 포상 제18조 시행규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의정부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의정부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3184,20220209))
(3184,20220209)

24)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의정부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3184,20220209\)/제1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의정부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3184,20220209)/제1조)

□ 한편, 의정부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위원회는 2년 임기로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요기능은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임

<표 4-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세부 내용

구분	담당업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료: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담당 조직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조례제정과 더불어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여성가족과 산하 가족인구정책팀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4-3〉 의정부시 가족인구정책팀 저출산 관련 업무

구분	담당업무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 가족인구정책업무총괄, • 저출산고령화 사업 연계 및 기획 • 저출산(고령)·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대응시책 발굴·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저출산 관련 지자체 평가 대응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

자료: 의정부시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portal/staff/list.do?mld=0504020000>
(접속일: 2022.03.01.)

2. 의정부시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정책

□ 의정부시는 생애주기에 따라 (1) 결혼·임신·출산 정책, (2) 보육·교육정책, (3) 일자리·주거 정책, (4)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의정부시의 결혼·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 임신 친화적 환경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육 지원정책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등을 통해 자녀의 보육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의정부시 일자리·주거안정지원 정책은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다자녀지원정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자동차 취득세 할인 등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표 4-4〉 의정부시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결혼·임신·출산 정책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신청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출산장려금(국민행복카드 200만원) 둘째 이후 출산장려금(현금 100만원,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60만원)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임신 전 부부 건강검진	남성 :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항목 여성 : 갑상선기능검사, 풍진, B형간염 등 10개 항목
	임산부 등록 관리	엽산제 지원(임신 전 3개월 지원, 임신 후 12주까지 지원) 임산부 요가, 산후우울 검사, 철분제 지원, 임신성 당뇨검사, 기형아 검사
	임산부 교실 운영	임산부 요가, 출산과정의 이해, 산후우울증 예방 교육 등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등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외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지원 (최대 11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 비용 정액 지원(최대 2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미숙아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및 출생 후 28일내 Q코드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 중 수술 받은 환자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한도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지원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매주 목요일 "시장님과 함께 하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이벤트 실시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난청초기진단사업 취학전 아동 설명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발달장애정밀진단비 지원사업
보육·교육 정책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서비스 및 어린이집 현황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0세-2세 매달 30만원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대상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대상 지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가필수 예방접종 17종(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무료 접종 시행
	아이돌봄 지원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의정부시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활동,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육아 정보 소통 등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직장고충상담, 자녀양육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에게 상시(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지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입양아동 양육 지원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급, 의료 급여 1종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과 후 보호 및 교육, 상담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부모상담, 인지영역, 신체 및 정서 행동 등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아기의 나이별 4단계 책꾸러미 배부, 책놀이 등 운영
	내 생애 첫 도서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택배서비스를 통한 책 대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영양소 바로 알기, 어린이 텃밭 조성, 손씻기 등 식품안전 체험형 교육 제공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지원
	국세청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
일자리주거 정책	의정부엄마품놀이학교운영	경력단절여성들의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 및 시민강사 양성, 엄마선생님과 영어동화, 창의수학, 생태교실 등 다양한 놀이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지원센터운영	구인구직 상담, 일자리박람회, 공공근로 사업 등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우리 시 거주 청년과 지역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직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사무 공간 제공, 창업교육,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연계
	의정부1인창조기업·중장년기술 창업센터운영	회의실, 사무 공간 제공, 경영지원, 창업기본교육 실시 등
	창업보육센터운영	사무공간 제공, 회의실, 마케팅, 경영지원 등
	의정부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
	직장인부부의휴가·휴직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년기본소득	1인당 분기별 25만원(연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전세임대사업 I, II	대상주택(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지원한도(I 형:수도권 1억2천만원, II 형:2억4천만원)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금리(최저 연 1.2%부터~), 한도(수도권 최대2억원, 그 외 지역 최대1억 6천만원), 기간(최초 2년, 최장 10년)
다자녀지원정책	자동차취득세감면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적용
	경기I-PLUS카드발급	I-PLUS 가맹점 이용 혜택 및 의정부시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영상미디어센터사용료등감면	의정부 영상미디어 센터 시설, 장비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낙양물사랑헬스장이용료감면	낙양물사랑 헬스장 이용료 50% 감면
	다자녀(셋째이상)국가장학금지원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
	전기및도시가스요금할인	전기및도시가스요금할인
	상하수도사용료감면	월 사용량 최대 10톤까지 감면(가구당 최대 10,600원)

자료: 의정부시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depart/contents.do?mld=0906000000#lnk> (접속일: 2022.03.01.)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 체계성의 문제점

- 의정부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필요한 정책 발굴 및 저출산·고령사회조례 및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분야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분야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조례상에서 제시하는 정책분야는 결혼지원, 일자리·주거·임신·출산·양육,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인구교육 등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 의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에서는 결혼지원관련 사업은 없었으며, 반대로 현재 운영중인 다자녀지원정책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서는 명시되지 않고 있음

이는 세부정책의 변화가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정책분야와 실제로 운영중인 세부정책의 체계성 및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의정부시는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 조직의 규모가 작은 편으로 분석됨

강영주·금창호(2017)는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226개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는 1유형: 저출산지역
- 합계출산율은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는 2유형: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 합계출산율과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는 3유형: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 합계출산율과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는 4유형: 초저출산지역

강영주·금창호(2017)의 연구에서 의정부시는 4유형(초저출산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다른 지역들보다도 저출산 대응정책에 행/재정적 자원 투입의 당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담당조직의 규모 및 역할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4-5> 유형별 지자체 구분

구분	담당업무
1유형 (71개) :저출산 지역	부산강서구, 인천중구, 인천서구, 대전유성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경기평택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동해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주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경북포항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창원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연천군, 강원홍천군, 강원철원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보은군, 충북진천군, 충북증평군, 충남태안군, 전남담양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해남군, 전남함평군, 전남장성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고령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울진군, 경남창녕군, 경남산청군
2유형 (53개) :초저출산 탈출가능 지역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노원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금천구, 서울동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동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울산중구, 경주시원시, 경기고양시, 강원강릉시, 전북전주시, 경북경주시, 경남진주시, 경남밀양시, 충북옥천군, 충북단양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경북청도군, 경북울릉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3유형 (51개) :초저출산진입 우려지역	광주광산군, 경기도동두천시, 경기도안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경기화성시, 경기양주시, 강원태백시, 충북제천시, 충남보령시, 충남아산시, 충남계룡시, 전북정읍시, 전남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목포시, 전남광양시, 경북상주시, 경남통영시, 인천옹진군, 충북음성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칠곡군, 경북봉화군, 경남의령군, 경남합안군, 경남고성군, 경남함양군, 경남거창군
4유형 (51개) :초저출산 지역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광진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영도구, 부산남구, 인천남구, 인천계양구, 광주서구, 대전대덕구,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충북충주시, 충남공주시, 인천강화군, 경기도평택, 경기양평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양양군, 충북영동군, 충북괴산군, 충남예산군, 전남고흥군, 경남합천군

자료: 강영주·금창호(2017) p.113-114

강영주·최지민(2018)은 행정구역(인구규모)별 지자체 저출산 정책 수행 조직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저출산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였음

- 저출산 정책 수행조직의 유형을 실국+과+팀, 과+팀, 실국+팀, 실국, 모두 없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의정부시처럼 ‘시’의 조직구조는 실국+과+팀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 의정부시는 과+팀의 형태로 ‘군’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4-6> 의정부시 가족인구정책팀 저출산 관련 업무

세부사항		시	군	구
조직구조: 전달체계 체계성	실국+과+팀	31	0	31
	과+팀	18	20	0
	실국+팀,	12	35	14
	실국	0	1	0
	모두 없음	14	25	25

자료: 강영주·최지민(2018), p.116

결국, 의정부시는 초저출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조직의 규모 및 역할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저출산 대응관련 전문성,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여성가족과 산하의 가족인구정책팀의 형태를 저출산분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실’의 형태로 승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사업분야는 생애주기별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나, 최근 결혼과 임신 준비 단계에 지원되는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전)과 임신(전) 단계로 사업분야가 세분화 되고 있음(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0: 62)

<표 4-7>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 사업분야

구분	단계	내용
사업분야	결혼(전)	결혼 목적의 만남, 미혼남여 건강검진, 청년 주택지원 등
	결혼	결혼준비(예: 예비부부교육, 주택마련 등), 결혼식, 신혼여행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
	임신(전)	임신 전 또는 임신단계에 지원하는 사업(예: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한방, 검사비 등), 산전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등)
	임신	임신부터 출산 전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예: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요가 및 마사지 등)
	출산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단계(출산 후 3개월 되는 시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예: 산후조리원비 지원,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선물, 산모도우미 지원, 신생아 사진촬영 등)
	육아	산후조리 종료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는 사업(단,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 제외)
	가족	저출산 및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출산 및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0), p.6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분야 기준으로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충족여부를 분석한 결과, 결혼 전, 결혼 단계의 지원정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주로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해주고, 수월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경기도 내 평택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일-가정양립분야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기본조례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항이 없으며, 저출산 대응정책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0)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분야가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 분야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를 요약하여 사업분야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4-8>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에 따른 의정부시 충족 여부

단계	내용	의정부시 시행여부
결혼(전)	결혼 목적의 만남	미비
	미혼남녀 건강검진	미비
	청년 주택지원	미비
결혼	결혼준비	미비
	결혼식	미비
	신혼여행	미비
임신(전)	난임지원	충족
	산전검사	충족
	건강검진	충족
임신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충족
	요가 및 마사지	충족
출산	산후조리원비	충족
	출산지원금	충족
	출산축하선물	충족
	산모도우미 지원	충족
육아	자녀양육	충족
가족	인구교육 및 캠페인	충족
	일가정 양립 홍보	미비

3. 의정부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성 문제

□ 기존 저출산 대응정책의 연장과 답습

의정부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성은 기존의 저출산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주택가격, 성차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변화와 선제적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문제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음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으로 인한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최소화 하여 지역에서 일하고 결혼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취·창업과 주거지원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에도 2021년 시행계획 중 청년일자리 및 주거지원 신규정책은 부족한 상황임

□ 임신/출산의료비의 정체

고연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안심체계 구축과 다양한 가정의 임신부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확대 필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고위험 산모의 증가, 난임, 다태아 출산 등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임신·출산 안심체계 구축 필요.

특히 의정부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임신출산 인프라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분만취약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지역 간의 서비스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이 요구됨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으로 소득기준과 난임 특성에 따른 횟수 제한 등이 있음.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혜택 중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대응 부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의 진행으로 출산 전후휴가, (남성)육아휴직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의정부시는 사각지대에 해당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일·가정양립관련 시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유연근무 활용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등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제도는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영세 사업장의 비율이 높은 의정부시의 경우, 일·가정양립제도 구현을 위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음

최근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이 용이한 안정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차원에서도 일·가정양립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성이 높음

제 5 장

의정부시 저출산 정책제언

제1절 인터뷰 결과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정책제언

제1절 인터뷰 결과

000 의원 :

정부에서는 사실 청년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출산장려금, 육아휴직정책 등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도 저출산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경우도 한가지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000 의원 :

제생각에는 저출산극복으로 유치원부모부터 초중고 부모님과 군부대, 소방대, 경찰서, 종교 단체, 유관단체 등에 현 저출산 심각상태를 강의하고, 전담 30개 기관과 단체 기업들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전담사회연대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하여 저출산 학술대회등을 개최했으면 합니다.

000 의원 :

의정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중 기업의 출산장려 도입과 장려에 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시가 체계적인 지원과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성과를 낸다면 참 의미있는 일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000 의원 :

우리가 0.7대의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거보다 평균 이하가 되는 거고요. 지역 권역은 그것이 훨씬 평균을 웃도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블랙홀로서의 각종의 자원들을 독점하는 현상들이 출산에도 직결되는 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컬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도시와 지역 간의 균형 잡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절 의정부시 저출산 정책제언

정책제언 1

저출산에 대한 의정부 인식 확산 실천

1. 저출산에 대한 의정부 인식 확산

□ 저출산 문제 인식 확산

의정부시는 2016년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고, 지역연구정책팀을 구성한 후 2017년에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초·중·고생 및 일반 시민에게 16회, 2,149명에게 실시하여, 인구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실천 MOU를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3개 기관과 체결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인식 개선 확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을버스 103대에 임신부 배려석을 설치·운영함

시민들에게 가족 사랑의 의미,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형식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거버넌스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따라서 향후 인식확산에 대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의정부시의 건전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해 저출산과 출산 장려에 관한 교양과목을 의정부의 지역대학에 개설하고, 초·중·고생 및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구교육을 확대해야 함

둘째, 의정부시와 공공기관, 군,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전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 전라남도에서 30개 기관과 단체, 기업 들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전남사회연대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 회의와 출산 장려 운동과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찾고, 분위기를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실제적 출산장려사업 추진

□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적극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이 필요. 199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20~50만원대의 자녀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대 와서는 자녀가 2명, 3명일 경우 급여 지급시 각종 세금, 4대보험 공제,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해옴. 그러나 출산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의정부시의 출산 장려는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첫째나 둘째 아이 출산에는 지원금이 없는데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의정부시가 인구와 출산 장려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저출산 대책,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다. 공모에 접수한 제안들은 심사와 경진대회를 통해 채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고, 시상을 하고 홍보해야 함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설치 지원,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상담,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용품 지원, 난임부부 및 다문화 가정 출산을 지원해야 함

의정부시는 출산장려기금의 조성,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도입,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 할 수도 있음. 임신·출산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 지원 현실화, 바우처 구매 유통점 확대 등도 도입해야 함

맞춤형 보육과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종일반 중심의 보육지원체계를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반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대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기부 활용 등을 통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의정부 관내 직능단체와 다자녀가구 지원 협약을 통해 학원비, 미용료, 각급 병원의 진료비, 안경구입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 임신부에 대한 할인과 지원 등을 도입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등 맞춤형 돌봄 지원도 필요

□ 기업의 출산장려 사업 도입 및 정착

의정부시의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 등을 하여야 함. 가족친화 기업인증,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기업 홍보 등을 해 주는 것

예를 들어 포스코 광양 제철소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직원들에게 '출산장려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광양 제철소는 출산장려 지원금은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직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 보육시설인 '포스코 어린이 집'을 광양, 서울, 포항에 운영하고 있음. 의정부시에서도 포스코와 같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시는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이 과도하여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함. 회사가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자별을 없애고,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각지대 개선이 중요

중소기업은 표준 인사관리제도 개발, 보급하는 경영지원정책 필요. 이때 중소기업의 산업 특성(제조업/서비스업), 경영환경, 조직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개발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정책에 패키지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워라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방안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 방안 (전문직과 비전문직 고려 필요)
- 결혼, 임신, 출산 후 퇴직 강요관행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정책제안 3

- 청년을 위한 저출산 정책 추진
- ① 일가정양립지원센터의 설립 제안
 - ② 직장맘지원센터의 설립 제안

3. 청년을 위한 저출산 정책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1) 직원 출산시 복지포인트 제공, (2) 모성보호시간, (3)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 (4) 유연근무제 운영, (5) 직원 가족사랑의 날·지정 운영 등을 하고 있음.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는 일반적인 사항임

출산 장려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함.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자녀를 돌보아 주는 조부모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출산 장려와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임.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유지가 실현될 수 있음

영유아 보육·교육의 서비스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2012년 영아 무상보육에 이어 2013년에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했어도,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구조 하에서 보육료 지원 위주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 효과가 낮았음. 일·가정양립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세부 과제로 명시하고, 해당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공공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45% 이상으로 개선하면, 의정부시도 보육서비스를 위해 공공형과 직장어린이집을 새롭게 증설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음. 현재 의정부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일 절대 부족한데,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 15만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함.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함

의정부시가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광주시와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센터 건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맘 지원 센터 설치', 공무원들의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문화 조성, 야근 감소, 정시 퇴근의 날 지정, 유연근무제 실시 등을 하는 것임.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 육아·출산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공동육아방 운영, 공동체 시설 활용을 통한 아이돌보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양육 지원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결혼과 주거 지원

미혼 남녀의 만남 자리 주선과 청춘 특강 및 커플여행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간소하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저비용 결혼식장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임. 의정부시청, 예술의전당, 공원 등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의정부시에서 결혼 축하금 지원과 신혼부부 힐링 캠프 운영 등도 할 필요가 있음

결혼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 주거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지원 강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대출조건 완화,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주택 공급시 다자녀가구 가산점 부여, 신혼부부 전세 임대 등 주택 지원을 시도할 수도 있음

□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우리나라의 현금지원 수준은 영유아들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아동 양육비는 영유아 보육 수요가 있는 가구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제외하면,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므로, 양육비는 자녀 수 이외에도 자녀의 연령이 주된 변수로 작용.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현행 영유아에 한정하지 말고 자녀 양육비가 점차 증가하는 학령기까지 지원해야 함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에서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위주이며, 신생아 지원에 한정됨. 의료지원은 임신과 출산 지원 위주이며, 신생아, 조산아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에 한정되고, 기저귀·조제분유 등 현물지원은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보편적인 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4

의정부 조례 및 지원사항의 전면적인 재검토

①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위원회 활성화

②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정

4. 현 의정부시 저출산 조례 및 지원사업 재검토

□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조례』제정개정

의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자체적 맞춤형 시책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인구정책팀은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부서의 집행기능(여성·출산·보육·노인 등)은 유지하면서 저출산 관련 기획기능을 보강하였음

다만 이러한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례 제정에 따른 효과가 미비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활성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는 당면직으로 공무원 7명과 위촉직 13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촉직은 시의원 2명, 교수 2명, 유관기관장 및 전문가 9명 등임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임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관련 아이디어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의정부시 저출산 지원 사업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은생애주기에 따라 (1) 결혼·임신·출산 지원, (2) 자녀양육지원, (3) 일·가정 양립지원 (4)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5) 일자리 주거 지

원 등에 따라 53개 영역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와 경기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의정부시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사업은 매우 적은 실정임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부시의 특성을 가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 저출산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조성

일본의 타마신도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도는 '타마신도시 재생 가이드라인'을 발표

도쿄도는 2018년 2월 “타마신도시재생가이드라인(ニュ?タウン ガイ ドライン)을 발표하고, 타마신도시의 재개발 방침을 수립

재생에 대한 3가지 기본 원칙으로 ‘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의 리뉴얼’, ‘대규모 미사용지 활용’, ‘도로·교통 네트워크효과 증대’를 지정함. 거점구역별로 형성된 주거-근린생활시설 체계를 집약형 지역구조로 교체하고, 근린상가를 거점으로 주거단지가 배치되던 기존의 도시구획을 탈피하여 도시기능을 주거, 업무시설, 병원과 보육시설, 상업시설별로 집약. 또한 주거단지에 종속된 근린상가 개념에서 벗어나 도로변에 점포를 배치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주거단지를 집약하여 재건축하는 등 도시기능구역간 이동을 전제로 도시기능 재배치

따라서 의정부시의 경우도 인구유입과 청년들의 생활안전을 통한 출산을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층의 인구유입과 출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제안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인 의정부시 연대회의 제안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정부시 연대회의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와 같은 의정부시만의 연대회의 구성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은 단순히 의정부시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음. 따라서 다양한 기관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의정부시에 있는 경제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보건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연대회의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협력적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함

□ 의정부시 저출산 연대회의 사업(예)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민관협력 인구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함

-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 함께하면 든든육아 캠페인
- 인구의 날 및 인구주간 행사
- 저출생대응 「시시콜콜」 100인 토크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음. 의정부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가능함

- 의정부시 저출산 육아 캠페인
- 의정부시 저출산 학술대회
- 의정부시 저출산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정책제안 6

저출산 조사 정례화를 위한 체계 구성

7. 저출산 조사 정례화를 위한 체계 구성

□ 의정부시 단위의 출산지원정책 통합관리체계를 마련

출산지원정책 현황 조사가 일관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이를 통합관리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 단위에서 저출산 또는 출산지원정책 담당 부서 또는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의정부시 출산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출산지원정책 현황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의 다양한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특히 다양한 기업의 지원과 같은 부분은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이 매우 중요. 또한 발굴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포상하여 출산지원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

정책제안 7

저출산 관련 기금의 조성

8. 저출산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저출산 관련 정책집행

□ 저출산극복기금(가칭)의 조성 및 다양한 사업전개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의 형태로 저출산극복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을 통한 다양한 정책사업 및 아이디어사업, 다양한 세미나개최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의 창출기반의 조성

참고문헌

- 강영주 · 최지민. 2017.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민곤 · 천지은. 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30(2): 163-190.
- 김상우. 2016. 『저출산 대책 평가 II: 정책우선순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
- 김상호 · 이삼식 · 오윤섭 · 고제이 · 이소영 · 천현숙 · 오신휘 · 최인선. 2017.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 · 이삼식 · 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한국인구학』29(1): 1-23.
- 이상협 · 이천희 · 홍석철. 20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환. 2014.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26(1): 23-51.
- 이성용. 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분석”. 『한국인구학』32(1): 2009, 51-70.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66(3): 5-42.
- 이충환 · 신준섭.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27(1): 97-124.
- 이희주 · 신현기, 정종원. 2021. “저출산 정책변동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서울행정학회』31(4), 225-251.
-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OECD,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Updated: 25-07-2018.
- Toshihiko Hara, A Shrinking Society: Post-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Springer, 20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연도별 분만건수”, 2019.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임신, 유사산, 출산 모니터링 방안”, 2016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6.10.21.

김성준,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2015.12.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

윤자영,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2012.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2013,

이상호·이상현,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제17권 제3호, 2011.9.

이철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2018.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2.

최필선·민인식,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2015.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9.02.27.

홍성국, 「수축사회: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메디치미디어, 2018.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3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organizationFunction.do>

(접속일: 2022.03.10.)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1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1조)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1조](https://www.law.go.kr/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140318,12449,20140318)/제21조)

별첨1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2. 2. 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184호, 2022. 2.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나.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9.>

- ⑤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5.1.>
- ⑦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 등) ① 시민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 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2장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8.9.20.>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

제11조(결혼지원) ①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추진 사업
 2.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민간 서포터즈 구성 등의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

제12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시장은 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시장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인구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7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814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856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20.]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66호, 2018. 9.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민이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영유아 키움수당”(이하 “키움수당”이라 한다)이란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7.11.15.>

제3조(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키움수당,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정에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자녀 이상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④ 별표의 의정부 희망플러스 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제4조(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키움수당의 지원대상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셋째 이상 자녀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재혼가정으로서 양쪽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여 셋째 이상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손위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셋째 이상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17.11.15.>

④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공부로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지원금액) 장려금 및 키움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원액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50만원
2. 키움수당의 지원액은 1인당 매월 5만원. 다만 지원기간은 처음 지급월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자 등 범위)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부 또는 모
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지급 대상 자녀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출생 신고서의 접수 등 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키움수당 등 각종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장려금 및 키움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8.9.20.>

1. 장려금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2. 키움수당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18.9.20.>

제9조(지원절차) ① 시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출생신고 사항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자의 해당 여부

② 시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려금 및 키움수당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을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한 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키움수당 지원의 중단) 시장은 매월 키움수당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전출·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11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장려금 및 키움수당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은 장려금 및 키움수당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지원) 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적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단체 및 사업체의 출산장려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하며 예산지원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키움수당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고, 제3조 제2항의 공공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를 "장애인과 의상자, 세자녀 이상 가정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의정부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가정

②「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부분 중 비고 라목의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라목의 "세자녀 이상 가정"은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수영장사용료 부분의 비고 나목 중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에게는"을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가정에게는"으로 한다.

④「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부분 중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자녀 가정

⑤「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실내빙상장 사용료표의 비고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한다.

부칙 부 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 칙 <2016.9.28.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1 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 - 2025

1. 수립배경 및 경과

1. 수립배경

-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
- 1.2명 내외를 유지해오던 합계출산율이 '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19년 0.92명까지 떨어지면서, 출생아 수도 '19년 30.3만명으로 급감
- 올해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25년 고령화율 20%, 고령자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총 인구규모 및 인구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변곡점이 될 전망으로, 그 추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 올해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구오너스기 본격화
- * '19.3월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이전 추계('16)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단축('29)
-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의 결과 올해를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
- * 도별 총인구 추계 : 수도권 26,032천명, 비수도권 25,806천명('20.10월)
- 저출생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그간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1. 수립배경 및 경과

2. 주요경과

■ '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추진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05.9.1)

●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 적극 추진

- (1차 : '06~'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영유아 보육, 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초노령연금, 장기 요양보험 도입으로 노후소득보장과 요양보호를 위한 제도 틀 구축

- (2차 : '11~'15)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11~), 무상보육 실시('13~) 등

- (3차 : '16~'20) 경제적 요인으로 만혼·비혼 추세에 따라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 시도

*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 '19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수정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을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가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

■ (4차) 위원회 산하 정책운영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등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약 1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 및 검토

* 7개 분과위원회, TF 등 (110회) / 정책운영위원회 (5회) / 본위원회 (4회)

● 관계부처 과제제출(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실무협의('20.9~11월) 실시

● 지역순회토론회('19.11~12월),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20.5월, 4,620개 제출), 현장방문 및 청년 간담회('20.3~7월), 주요과제 토론회('20.7~11월), 시안 공청회('20.11.26) 등 국민 참여 유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 1 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10 ●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토양과 인식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인문사회 포럼 운영('20.6~8월, 보건복지부)

●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 실시 및 총리실·BH 통한 관계부처 협의

* BH, 복지부, 총리실 주관 핵심·쟁점과제 조정회의(5회), 국무총리 목요대화(2회), 사회·경제 현안조율회의 등 개최

3. 추진체계

■ 분과위원회별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논의·검토 후 정책운영위 사전 검토·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

방향설정

과제도출

분과위원회 (7개 분과*)

▶ 민간위원(필요시 관계부처 참석)

시안마련

이견조정

정책운영위원회

▶ 위원장 및 6개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36인

방침확정

최종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및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인 등 총 25인

* 미래기획 / 세대공감 / 일·생활균형 / 성평등노동권 / 가족다양성 / 아동돌봄 / 지역상생 분과

의정부시 저출산문제에 대응한 정책적제안 연구

2022. 05.

참여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김환철 교수 (경민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장)
공 동 연 구 원	정원희 (건양대학교 교수)
	정소현 (경민대학교 교수)
연구 회 대 표 의 원	조금석
연구 회 시 의 원	구구희, 김영숙, 김현주, 박순자, 임호석, 오범구
